



연소 및 여성근로자 문제는 산업보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몇 가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13세 미만자로 해당 장관의 취직인허증이 없으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1986년 10월에 나온 국제노동기구(ILO)의 정보에 의하면 몇몇 아시아 나라들에서는 현재 전 노동인구의 11%가 15세 이하의 연소근로자들이다. 아프리카의 몇몇나라는 이보다 더 높아서 12%까지 달하고 중앙아메리카의 어린이들중 12~26%가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볼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수년전에 ILO가 추정한 바로는 연소근로자가 5천만명이라고 하였으나 어떤 전문가들은 적어도 1억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960년대초 부터 연소근로자수가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여기에는 개도국에서 초등교육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세~11세 어린이의 등교률이 아프리카에서는 32.7%(1960)에서 65.9%(1985)로, 아시아에서는 54.4%에서 73.6%로 카리브해연안국들은 57.7%에서 83.5%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등교률은 지역마다 많은 차이가 있고 아직도 제3세계의 여러나라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광산같은 위험한 곳에서 일함으로써 재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고 있다. 많은 어린이들이 방과후 가족의 일손을 덜어준다든지 용돈을 벌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지 싸구려 노동력으로서 공장, 농장, 상점등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근로장에서 “어린이는 불행한 현재와 처량한 미래를 원망하면서 미숙한 성인의 삶을 강요받는 것”이 연소노동이라고 ILO연구에서 지적하였다.

연소근로자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빈곤과 실업이라는 사회적 질병을 해결해야 한다. 비록 교육이 연소근로자 문제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지만 가난한 가족들에게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 어린이가 벌어들이는 돈이 생계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어린이를 학교에 보낸다면 교육비 자체도 물론이거니와 이제까지 겨우 유지하고 있던 생활기반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연소근로자의 근본적 원인이 가난때문이라면 결국 뒤따르는 것은 가난 뿐이다. 왜냐하면 연소근로자가 많은 곳은 임금이 비싼 나이든 근로자대신 쌈임금을 위해 어린이를 채용한 것 때문이고 결국 성인은 실업을 하게 된다. 이런 경우 법의 감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렇게 연소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경 우에는 적절한 입법조치와 성인에 대한 고용계획 모형 같은 것을 준비하여 수입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난을 덜어주어야 한다. 연소근로자를 줄이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목표는 행정부의 노력여하에 따라 크게 영향받는다 여기에는 노동, 교육, 보건 및 복지의 관련 부서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연소근로자 문제는 ILO의 주요 관건중의 하나다. 이 분야에서의 ILO의 목표인 연소근로자의 보호와 궁극적 목표인 연소근로자의 근절에는 정부, 경영자, 노동조합간의 적극적이고도 협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ILO에서 제정한 연소근로자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20개항 이상의 약정과 권고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연소근로자에 관한 현황, 용어, 고용분야등, 개개 국가의 성장정도에 따라 요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충분히 융통성있게 규정짓고 있다.